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한 상법상의 규제완화의 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Deregulation in respect of
Incorporation Process of Business Corporations Under
Commercial Code

정 대*
Chung, Dae

목 차

- I. 서론
- II. 규제완화의 의의
- III.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한 규제완화의 연혁과 효과
- IV. 결론

국문초록

자본주의 경제시스템 속에서 주식회사제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주식회사제도는 자본금, 주식 및 주주의 유한책임을 핵심요소로 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논문접수일 : 2012.12.28

심사완료일 : 2013.01.22

제재확정일 : 2013.01.24

* 본 논문은 2012년 8월 11일에 개최된 한국입법정책학회 제32회 하계학술대회에서 필자가 발 표한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한 규제완화입법의 효과에 대한 음미-Good, Bad or Vague-”라는 제목의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유익한 토론을 해 주신 전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병규 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 법학박사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부교수

정부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와 관련한 규정에 대해 지난 50년 동안 수차례 개정을 해오고 있다. 대체적으로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완화하여 주식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의 개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법의 개정을 규제완화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식회사 설립절차에 대한 규제완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학문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처럼 보인다.

이하 본 논문에서는 첫째 규제완화의 의미를 검토해 보고(II), 둘째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한 상법상의 규제완화의 내용과 연혁을 고찰한 후, 그 규제완화의 효과에 대해 주식회사의 설립 건수를 중심으로 음미하고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III).

본 논문의 연구결과 1991년 이후 주식회사의 설립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주식회사의 설립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원인은 설립절차에 대한 상법상의 규제완화의 효과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설립 건수의 증가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과 침체라고 하는 경제적 상황과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장래 상법상의 규제완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기업문화, 일반국민의 기업에 대한 인식 등과 같은 규제완화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과 요인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 규제완화, 주식회사, 설립절차, 상법의 개정, 설립등기, 설립경과의 조사

I. 서론

자본주의 경제시스템 속에서 주식회사의 기능과 중요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자본금,¹⁾ 주식 및 주주의 유한책임을 특징으로 하는 주식회사²⁾는 자본

1) 자본금이란 ①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에서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상 제451조 제1항)을 의미하고, ②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에서는 주식의 발행가액 중 이사회가 자본금으로

주의 경제시스템을 유지하는 핵심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기업에 관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상법은 회사의 형태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의 5종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기업의 현실도 회사라고 하면 바로 주식회사로 이해할 정도로 그 형태와 수에서 다른 회사의 형태를 암도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상법의 회사 편은 주식회사 법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부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와 관련한 규정에 대해 지난 50년 동안 수차례 걸쳐 개정을 해오고 있다. 대체적으로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완화하여 주식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의 개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법의 개정을 규제완화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식회사 설립절차에 대한 규제완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학문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처럼 보인다.

이하 본 논문에서는 첫째 규제완화의 의미를 검토해 보고(II), 둘째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한 규제완화의 내용과 그 연혁을 고찰한 후, 그 규제완화의 효과를 음미하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III).

II. 규제완화의 의의

1. 규제의 개념과 유형

가. 규제의 개념

규제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는데,³⁾ 정치경제학적 관점에

계상한 금액(상 제451조 제2항)을 의미한다. 이철송, 「제20판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2, 208면.

2) 상계서, 207면.

3)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2001, 27-28면; 김재광, "규제와 법제 개선 그리고 경제적 효

서 규제(regulation)란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⁴⁾ 이와 같은 규제의 개념을 분석하면, 첫째, 규제는 정부가 민간(기업과 개인)의 의사 결정과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다. 둘째, 규제는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⁵⁾

실정법상의 규제의 개념으로는 ① 「행정규제기본법」상의 행정규제와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행정규제가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상의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제2조 제1호). 한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행정규제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활동⁶⁾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호). 전자의 규제는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후자의 규제는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규제에 관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⁷⁾

결론적으로 규제의 개념은 법적인 맥락에서 넓은 의미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규제란 행정주체가 사적활동에 대하여 공익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입하는 것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분석하면 첫째 개입이란 다른 주체의 활동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작용이다. 둘째

과", 「경제!-Regulation? - 규제 입법의 현황과 향후 과제-(공동 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국 입법정책학회, 2012, 8-10면.

4) 최병선, 전계서, 18면.

5) 상계서, 18-24면.

6) "기업활동"이란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7) 김재광, 전계논문, 9-10면.

8)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홍문사, 2010, 11-12면.

개입의 주체는 행정주체이다. 셋째, 개입의 대상은 개인 또는 기업의 사적 활동이다. 넷째 개입의 목적은 공익의 실현이다.⁹⁾

나. 규제의 유형

(1) 경제적 규제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란 소비자보호 및 생산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정부규제를 의미한다. 기업의 본원적 활동이란 기업의 설립, 영업 및 운영 등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보호의 목적의 내용으로는 독과점적 횡포의 방지, 부당이득의 방지, 부당한 가격차별의 방지, 교차보조를 통한 서비스공급의 확대 등이 있고, 생산자보호의 목적의 내용으로는 과당경쟁의 방지, 산업육성, 불공정한 기업간 경쟁의 방지 등이 있다.¹⁰⁾

(2) 사회적 규제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란 삶의 질 확보,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신장, 경제적 약자의 보호 및 사회적 형평의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규제를 의미한다. 기업의 사회적 행동(social conduct)이란 환경오염,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협, 소비자 권익의 침해,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등과 같이 그 문제가 기업내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기업행동을 말한다.¹¹⁾

2. 규제완화의 배경과 논리

가. 규제완화의 의미

9) 김재광, 전계논문, 10면.

10) 최병선, 전계서, 28-39면.

11) 상계서, 39-43면.

규제의 개념을 넓은 의미로 행정주체가 사적활동에 대하여 공익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입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규제완화¹²⁾란 행정주체가 사적 활동에 대한 개입을 축소시키거나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시대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변화로 규제의 목적이 정당성 또는 합리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러한 규제를 축소시키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민간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창의와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고, 사회적 규제는 강화하여야 한다는 입장¹³⁾이 있을 수 있지만, 사회적 규제 중에도 규제의 합리성 또는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¹⁴⁾

나. 규제완화의 배경과 논리

(1) 경제의 효율성의 저하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정부의 시장개입의 결과 오히려 경제의 활력이 위축되고, 전반적인 경제의 효율성(efficiency)이 저하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예를 들면, 비효율적인 기업이 정부규제의 보호 속에서 존속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¹⁵⁾

(2) 기업의 경쟁력의 약화

과도한 정부규제로 인해 국가의 경제구조가 경직화되고, 그 결과 기업의 경쟁력(competitiveness)이 약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¹⁶⁾

12) 규제완화라는 용어보다는 규제개혁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김재광, 전계논문, 10-11면.

13) 최병선, 전계서, 836-841면.

14) 한상우,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과 향후 입법적 과제”, 「경제!-Regulation? - 규제 입법의 현황과 향후 과제-(공동 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국입법정책학회, 2012, 61-63면.

15) 최병선, 전계서, 629면.

(3) 정부부문의 비효율성의 증가

정부의 개입이 심화되고 확대되면서 경제의 효율성은 저하되는 반면에 정부부문은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어 오히려 정부부문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는 인식의 확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의 실현이 핵심과제로 부각되었다.¹⁷⁾

(4) 혁신적 기업의 출현 방해

정보화가 진전되고 기술의 고도화가 진행되는 등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규제가 이러한 경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서 정부의 규제가 혁신적 기업의 출현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¹⁸⁾

III.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한 규제완화의 연혁과 효과

1. 기업지배구조와 규제완화

기업지배구조란 넓은 의미로는 기업이라는 경제활동의 단위를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배분의 문제를 포함한 경영자통제 메커니즘을 말한다¹⁹⁾고 할 수 있다.²⁰⁾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두 가지 모델이 있다. 첫째, 주주(shareholder)중심모델이다.²¹⁾ 주주중심모델에 의하면,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이고, 이사 및 임

16) 상계서, 629면.

17) 상계서, 630면.

18) 상계서, 630면.

19) 김화진,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 박영사, 2010, 10면.

20) 기업지배구조를 회사의 조직운영에 있어서의 법적 구조와 실제 힘의 흐름구조라고 하는 이해하는 입장도 좁은 의미의 기업지배구조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철송, 앞의 책, 479쪽.

21) 주주중심모델에 관한 최근의 대표적인 문헌으로 Henry Hansmann & Reinier Kraakman,

원은 주주이익의 단순한 관리인이기 때문에 회사경영의 목적은 주주이익의 극대화에 있다고 본다.²²⁾

둘째, 이해관계자(stakeholder)모델이다.²³⁾ 이해관계자모델에 의하면, 주주 외에 경영진, 종업원, 채권자, 지역사회 등 다수의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중시하게 된다.²⁴⁾

실질적인 의미에서 기업지배구조를 연구하는 목적은 기업의 대리인 비용 (agency cost)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⁵⁾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기업지배구조 모델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그 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이익이 되는지의 문제이다. 주식회사의 설립을 완화하여 용이하게 하면, 적어도 주식회사설립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창업자(발기인 또는 주주)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두 가지 모델 모두의 경우에 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규제완화는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해관계자 모델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설립 건수가 증가하면, 지역사회 의 경제가 활성화되어 세금 수입이 늘어날 수 있고, 고용이 창출됨과 아울러 채권자인 은행에 입장에서는 새로운 대출처가 확보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설립에 대한 규제완화의 이익이 더욱 확대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상법상 설립절차에 대한 규제완화의 연혁

"The End of History for Corporate Law", 89 *Georgetown Law Journal* 439, 2001.

22) 안수현, "내부통제의 회사법제 정비를 위한 검토", 「상사판례연구」 제20집 제2권, 한국상사 판례학회, 2007, 41면.

23) 이해관계자모델에 관한 최근의 대표적인 문헌으로 Martin Gelter, "The Dark Side of Shareholder Influence: Managerial Autonomy and Stakeholder Orientation in Comparative Corporate Governance", 50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129, 2009.

24) 안수현, 전계논문, 41-42면.

25) 김화진, 전계서, 11-12면.

가. 1962년 제정 상법상의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전체상

상법은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되고,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상법 회사편의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설

주식회사는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하는 이외에 그 물적 기초인 자본의 형성과 관련하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와 납입, 기타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함으로써 그 실체를 형성하게 된다.²⁶⁾

(2) 정관의 작성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데 (상 제289조),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한다(상 제292조). 이러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목적(상 제289조 제1항 제1호)
- ② 상호(상 제289조 제1항 제2호)
-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상 제289조 제1항 제3호)
회사가 장래에 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주식의 총수이며, 이사회에 주식발행이 위임된 수권자본을 의미한다.
- ④ 1주의 금액(상 제289조 제1항 제4호)
주식을 금액으로 표시하는 단위, 즉 1주의 금액은 500원 이상이어야 하며 균일하여야 한다(상 제329조 제2항, 제3항).
- ⑤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상 제289조 제1항 제5호)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상 제289조 제2항).
- ⑥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상 제289조 제1항 제6호)
- ⑦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상 제289조 제1항 제7호)

26) 우홍구, 「회사법」, 진명문화사, 1977, 75면.

- ⑧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상 제289조 제1항 제8호)
- ⑨ 정관의 작성연월일(상 제289조 제1항 제9호)

(3)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지만, 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하여 그리고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전원의 동의로 정하여야 한다(상 제291조).

(4) 회사의 실체형성절차

(가) 발기설립

1) 발기인에 의한 주식총수의 인수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를 서면으로 인수하여야 한다(상 제293조, 제295조).

2) 출자의 이행

발기인이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는데(상 제295조), 금전출자가 원칙이다.

한편,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하는데(상 제295조 제2항), 회사 설립시에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자는 발기인에 한한다(상 제294조).²⁷⁾

3) 이사와 감사의 선임

각 주식에 대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없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이 선임은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결

27) 상계서, 84면.

정한다(상 제296조 제1항). 이 때 발기인의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의결권으로 한다(상 제296조 제2항). 이사의 원수는 3인 이상이지만(상 제383조 제1항), 감사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4) 설립경과의 조사

이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설립의 경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상 제298조). 검사인은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 주식에 대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기타 설립에 관한 사항의 정관위반여부를 조사한 후, 이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그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상 제299조). 이에 대해서는 검사인의 선임에 의한 설립경과의 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설립등기가 지체된다는 비판이 있다.²⁸⁾

(나) 모집설립

1) 주주의 모집

발기인이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본의 충실을 위하여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상 제301조). 이 경우 각 발기인은 주주모집에 앞서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주주모집의 방법에 대하여는 주식청약서주의에 따라서 발기인은 주식청약서를 작성하고 그 법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상 제302조 제1항, 제2항).

2) 주식의 인수

주주의 모집에 응하여 주식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상 제302조 제1항). 주식의 청약이 있으면 발기인은 주식의 배정을 하여야 한다(주식배정자유의 원칙).

3) 출자의 이행

28) 상계서, 89면.

인수완료 후,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 가액의 전액납입을 시켜야 하는데(상 제305조 제1항), 이 경우 금전출자가 원칙이다. 금전출자의 납입장소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서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장소여야 한다(상 제305조 제2항).

4) 창립총회: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발행주식총수의 인수가 완료되고, 각주에 대하여 주금전액이 납입되고, 현물 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발기인이 창립총회를 소집하게 된다(상 제308조 제1항).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상 제312조). 이 때, 이사의 원수는 3인 이상이지만(상 제383조 제1항), 감사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 또한 인수된 주식총수, 즉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써 결의한다(상 제309조, 제368조 제1항, 제434조). 창립총회의 결의에 특별 결의방법을 요구하는 이유는 회사 설립에 관한 종국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의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결의에 대한 발기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점에 있다.²⁹⁾

5) 설립경과의 조사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에 대한 인수의 정확여부, 인수주금액의 납입과 현물출자 이행의 정확 여부, 변태 설립에 관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 여부 등을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상 제313조 제1항). 만약에 이사 및 감사 전원이 발기인 중에서 선임된 때에는 설립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창립총회는 검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상 제313조 제3항).

(5) 설립등기

29) 상계서, 99면.

주식회사 설립의 최종절차로서 발기설립의 경우이든 모집설립의 경우이든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제317조).

나. 1984년 개정 상법

1962년 제정 상법이 경제의 고도 성장기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1984년 상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³⁰⁾ 즉 상법과 기업현실의 괴리를 메우기 위한 상법의 개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84년 상법 개정 가운데 회사법 개정의 목적은 회사자금조달의 원활화, 투자자 등 회사이해관계자의 보호 강화, 주식회사 운영의 효율화, 주식회사제도의 남용방지, 기타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규정의 정비 등을 통하여 건전한 주식회사의 육성·발전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었다.³¹⁾

1984년 개정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① 주식회사의 최저자본제의 도입(상 제329조 제1항)과 ② 주식의 액면가의 인상(상 제329조 제4항)이었다.³²⁾ 즉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을 5,000만원으로 규정한 것이다. 또한, 주식의 액면가를 종래의 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였다. 1984년 개정 상법이 주식회사설립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표방하였다 는 점에서 보면, 최저자본금제도의 도입은 1962년 상법의 규정과 비교하면, 주식회사의 설립 규제의 강화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 1995년 개정 상법

1984년 개정 상법이 우리 경제사회의 수요를 만족시켜 주지 못한 관계로

30) 1984년 상법 개정의 경과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이기수·최병규, 「제8판 회사법」, 박영사, 2009, 35-36면.

31) 상계서, 36면.

32) 1962년 제정 상법상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상 제289조 제2항)”는 규정은 1984년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상 제289조 제2항)”로 개정되었다.

1995년 상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³³⁾ 1995년 개정 상법의 제안이유를 보면, 기업설립절차의 간소화, 기업활동의 활성화, 주주의 권익의 보호, 기업의 국제경쟁력의 제고 등의 목적을 찾을 수 있다.³⁴⁾

1995년 개정 상법을 통해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간소화가 이루어졌다. 그 주된 내용은 ① 발기설립에서의 검사인의 선임(상 제298조)을 폐지하고, ② 변태설립사항에 대해 요구되는 검사인의 조사를 감정인의 감정 또는 공증인의 조사(상 제299조의2, 상 제310조 제3항)로 대신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이다. 즉 종래에는 발기설립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설립경과조사를 하였는데, 상법의 개정으로 발기설립의 경우에 설립경과조사는 이사·감사가 하게 되었다(제298조). 또한, 변태설립사항에 대해 요구되는 검사인의 조사를 감정인의 감정 또는 공증인의 조사(상 제299조의2, 상 제310조 제3항)로 갈음할 수 있게 되었다.³⁵⁾

또한, ③ 종래에 7인 이상이었던 주식회사 발기인의 원수를 3인 이상으로 축소하였다.³⁶⁾ 그리고 ④ 발기인만이 현물출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제한을 철폐하였다. 즉 종래에는 회사 설립시에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자는 발기인에 한한다(상 제294조)고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를 삭제하였다.³⁷⁾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1995년 개정 상법은 주식회사 설립절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 1998년 개정 상법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이 요구되었고, 이와 함께 기업경영의 투명성의 제고가 강조되면서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가 요구되었다.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과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의 목적을 위해 상법

33) 1995년 상법 개정의 경과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이기수·최병규, 전계서, 37-38면.

34) 최기원, 「제13대정판 회사법」, 박영사, 2009, 25면.

35) 임재연, 「회사법I」, 박영사, 2012, 8면 각주16.

36) 최기원, 전계서, 25면.

37) 상계서, 25면.

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³⁸⁾

1998년 개정 상법의 취지는 최근의 경제위기에 대해 대응하고, 원활하고 합리적인 경제구조개편을 위해서 기업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며,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었다.³⁹⁾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① 주식의 최저액면금액의 변경과 ② 이사의 수의 자율화였다. 첫째, 주식의 최저액면금액을 종전의 5,000원 이상에서 100원 이상으로 인하하였다(상 제329조, 제329조의2). 둘째, 종래 3인 이상으로 의무화되어 있던 이사의 원수를 자본금 5억원 미만의 회사의 경우에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상 제383조 제1항 단서).⁴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주식회사에 대해서까지 3인 이상의 이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⁴¹⁾

소규모 주식회사의 설립을 고려한다면, 1998년 개정 상법은 소규모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의 완화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마. 1999년 개정 상법

1999년 개정 상법은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추진되었다. 따라서 주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역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⁴²⁾

개정의 주된 내용은 주식매수선택권제도의 도입, 이사회내 위원회제도의 신설,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 주주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의 허용, 주주총회의 의장의 질서유지권의 도입 등이다.⁴³⁾

38) 이에 관한 상세한 배경 및 경과는 이기수·최병규, 전계서, 39-40면.

39) 최기원, 전계서, 25면.

40) 이기수·최병규, 전계서, 40-41면; 최기원, 상계서, 25-26면.

41) 이기수·최병규, 상계서, 40-41면.

42) 이기수·최병규, 상계서, 41면; 최기원, 전계서, 26면.

43) 이기수·최병규, 상계서, 41-42면; 최기원, 상계서, 26면.

바. 2001년 개정 상법

2001년 상법 개정의 이유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있었다.⁴⁴⁾

첫째, 지주회사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제도를 도입하였다.

둘째,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내용은 1인 주식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즉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상 제288조)고 규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발기인의 원수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 것이다. 이것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제도와 관련하여 완전모회사의 형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⁴⁵⁾

발기인의 원수에 대한 제한의 폐지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제도의 도입과 주로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개정 상법은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가장 획기적인 규제완화입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사. 2009년 개정 상법

2009년도에는 1월과 5월에 상법이 개정되었다. 첫째, 2009년 1월 개정 상법은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는데, 2009년 2월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구 증권거래법상의 주권상장법인 특례규정을 상법 회사편에 포함시키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었다.⁴⁶⁾

둘째, 2009년 5월의 개정 상법은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경영의 IT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주로 소규모 주식회사의 설립을 염두에 두고 그 설립절차를 간소화하였

44) 상법의 개정경위에 대해서는 이기수·최병규, 상계서, 42-43면; 최기원, 상계서, 26면.

45) 이기수·최병규, 상계서, 43면.

46) 이기수·최병규, 상계서, 48면; 임재연, 전계서, 10면.

다. 즉 ① 1984년 도입되어 시행되어 오던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되었다(상 제329조 제1항). ②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정관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의무를 면제하였다. 즉 자본금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상 제292조 단서). ③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자본금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상 제318조 제3항). ④ 주식회사의 이사의 원수와 관련하여 자본금 총액의 요건이 개정되었다. 즉 종전에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회사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던 규정을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다(상 제383조 제1항 단서). 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감사선임의무를 면제하였다. 즉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상 제409조 제4항).⁴⁷⁾

2009년 개정 상법은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 2011년 개정 상법

2011년 개정 상법은 ① 합자조합·유한책임회사와 같은 새로운 기업형태의 창설, ② 집행임원제도 및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지배구조의 보완, ③ 이사의 책임감면제도의 신설, ④ 이사·회사의 이익충돌방지의 강화, ⑤ 무액면주식제도의 신설 등과 같은 주식제도의 개편,⁴⁸⁾ ⑥ 재무관련제도의 개선, ⑦ 사채제도의 개선, ⑧ 합병제도의 개선, ⑨ 강제주식매도·매수청구제도의 신

47) 이기수·최병규, 상계서, 50-52면; 이철송, 전계서, 28면.

48) 1984년 개정 상법상 도입되었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상 제289조 제2항)”는 규정은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⁴⁹⁾

자. 현행 상법상 설립가능한 주식회사의 형태

소규모 주식회사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의미하며⁵⁰⁾, 이러한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유형은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이 있고, 감사가 없는 소규모 주식회사이다.

둘째 유형은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이 있고, 감사가 있는 소규모 주식회사이다.

반면에 소규모 주식회사가 아닌 일반주식회사의 지배구조는 이사가 3인 이상이고,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있는 주식회사가 통상이라고 할 것이다.

3. 상법상 설립절차에 대한 규제완화의 효과

가. 상법의 개정과 주식회사 설립 전수의 상관관계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상법 제170조는 회사의 종류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한책임회사는 2011년 상법의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회사이기 때문에 설립과 관련된 실증자료를 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4종을 중심으로 설립등기 내역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한 규제완화의 효과와 함께 회사 형태의 선택의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의 결과⁵¹⁾에 의하면 1991년부터 2000년까지의 10년간의 통계는 전

49) 2011년 개정 상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철송, 「2011 개정 상법-축조해설-」, 박영사, 2011: 임재연, 전계서, 11-16면.

50) 이철송 교수는 이를 소규모회사라고 부른다. 이철송, 전계 각주1, 89면, 705면 이하.

51) 오수근 · 김성애, “회사 형태의 선택에 관한 실증연구”, 「상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상

체 회사 중 주식회사의 비중이 약 93%에 이른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가 없는 한 회사의 형태를 선택할 때 주식회사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주식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자본금의 부족 등의 사유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없거나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이다. 그 특별한 목적이란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⁵²⁾

〈표 1〉 1991~2000 회사설립 등기 내역⁵³⁾

년도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	계
1991	57	480	17,237	1,298	-	19,072
1992	78	478	17,319	2,268	-	20,143
1993	101	463	17,286	2,157	-	20,007
1994	206	771	25,869	1,318	10	28,174
1995	204	841	26,405	1,208	-	28,658
1996	209	739	28,996	1,315	-	31,259
1997	169	667	32,398	1,223	-	34,457
1998	67	384	29,401	1,099	95	31,046
1999	48	398	47,339	1,358	167	49,310
2000	53	334	59,122	1,686	261	61,456
계 (%)	1,192 (0.37)	5,555 (1.72)	301,372 (93.14)	14,930 (4.61)	533 (0.16)	323,582 (100)

〈표 1〉과 〈표 2〉의 통계를 갖고,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관한 상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시기를 대비해 보면, 첫째, 1995년 개정 이후 1996년에는 28,996개의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따라서 1995년 대비 2,591개의 주식회사가 더 설립되었다. 1997년에는 1995년 대비 6,093개의 주식회사가 더 설립되었다. 둘째, 1998년 개정 이후 1999년에는 47,339개의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1998년

사법학회, 2002.

52) 상계논문, 421-423면.

53) 상계논문, 398면 각주1.

대비 17,938개의 주식회사가 더 설립되었다. 2000년에는 1998년 대비 29,401개의 주식회사가 더 설립되었다.

셋째, 2001년도 상법 개정 이후의 주식회사의 설립 수의 변화를 보면 2002년에 59,440개의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2001년 대비 62개의 주식회사가 더 설립되었다. 그러나 2003년에는 2001년 대비 8,202개의 주식회사가 덜 설립되었고, 2004년에는 2001년 대비 12,737개의 주식회사가 덜 설립되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주식회사의 설립 건수를 보면, 2001년 대비 그 설립 건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2003년을 정점으로 주식회사의 설립 건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2009년 상법 개정 이후의 변화를 보면 2010년에 59,671개의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2009년 대비 5,346개의 주식회사가 더 설립되었다. 그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1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주식회사 설립 건수가 2001년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할 수 있다.

〈표 2〉 2001~2010 회사설립 등기 내역⁵⁴⁾

연도 \ 종류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	계
2001	82	386	59,378	2,081	241	62,168
2002	51	277	59,440	1,870	214	61,852
2003	30	231	51,176	1,906	20	53,363
2004	20	174	46,641	2,355	187	49,377
2005	23	234	50,356	2,667	386	53,666
2006	26	263	48,246	2,441	391	51,367
2007	29	312	51,190	2,434	362	54,327
2008	40	455	48,178	2,819	373	51,865
2009	58	550	54,325	3,415	271	58,619
2010	51	160	59,671	2,835	300	63,017
계 (%)	410 (0.07)	3,042 (0.54)	528,601 (94.46)	24,823 (4.44)	2,745 (0.49)	559,621 (100)

54) 법원행정처, 「2002년 사법연감(2001.1.1.~12.31)」~「2011년 사법연감(2010.1.1.~12.31)」.

나. 규제완화의 효과에 대한 분석

그렇다면,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한 규제완화의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 1995년 개정과 관련해서 보면, 상법 개정전 1993년 대비 1994년에 8,583개의 회사가 더 설립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규제완화의 실증적 효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의 고도성장이라는 경제적 배경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추정된다.⁵⁵⁾ 예컨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 추진된 신경제5개년계획(1993-1997)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연 평균경제성장을은 7.4%에 이를 정도였다.⁵⁶⁾

다음으로 1998년 개정의 경우에는 전제가 되어야 할 객관적 사실이 있다. 그것은 1997년도 말의 외환위기이다. 그래서 1998년에는 1997년 대비 주식회사의 설립 수가 감소한다. 그리고 1999년도와 2000년도에 주식회사의 설립 수가 급증하게 되는데, 그것이 규제완화의 직접적인 효과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정부가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경제가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의 산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1997년의 우리나라 실질경제성장을은 4.7%였는데, 외환위기의 여파로 1998년에는 -6.9%성장을 하게 되지만, 1999년에는 9.5%, 2000년에는 8.5%의 실질경제성장을 기록함으로써 빠르게 외환위기를 극복하였음을 알 수 있다.⁵⁷⁾

2001년 상법 개정으로 1인 주식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을 정점으로 2001년 대비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주식회사의 설립 건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원인 중의 하나가 발기인의 수의 확보에 있다고 하는 지적을 고려해 보면⁵⁸⁾, 1인 주식회사의 설립이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설립 건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55)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1993년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10억 달러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제상황이 1994년도 주식회사의 설립 수의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고 추측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행, 「한국은행50년사」, 2000, 526면.

56) 상계서, 523-526면.

57)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인터넷 자료), <http://ko.wikipedia.org/wiki/>

58) 오수근·김성애, 전개논문, 421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본다.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주식회사의 설립 건수가 증가한 것은 2000년도 우리나라의 실질경제성장률이 8.5%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⁵⁹⁾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주식회사의 설립 건수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반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우리나라의 평균 실질경제성장률이 4.42%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⁶⁰⁾ 경제성장의둔화가 주식회사의 설립 건수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의 1인 설립이 허용되고 나아가 주식회사의 설립의 가장 큰 제한이었던 최저자본금제도의 폐지⁶¹⁾로 주식회사의 설립은 더 한층 용이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상법 개정 이후의 주식회사의 설립 건수의 변화를 보면 그 증가의 폭이 작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을 보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서 기인한 전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8년도 우리나라의 실질경제성장률은 2.3%, 2009년도에는 0.3%에 불과하였다.⁶²⁾ 2010년 들어서 실질 경제성장률이 6.2% 수준으로 회복되었는데,⁶³⁾ 이러한 경제상황이 주식회사의 설립 건수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본다.

IV. 결론

정부는 상법 개정을 통해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해서 규제완화만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적어도 1984년 개정 상법은 주식회사의 남설로 인한 폐해⁶⁴⁾를 방지하고자 시도한 입

59)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인터넷 자료), <http://ko.wikipedia.org/wiki/>

60)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인터넷 자료), <http://ko.wikipedia.org/wiki/>

61) 주식회사 설립의 어려움으로 자본금의 부족을 들고 있다. 오수근·김성애, 전계논문, 421면.

62)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인터넷 자료), <http://ko.wikipedia.org/wiki/>

63)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인터넷 자료), <http://ko.wikipedia.org/wiki/>

64) 자본적 기초가 취약한 주식회사의 남설은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정동윤, 「제7판 회사법」, 법문사, 2001, 87면.

법이었기 때문이다.⁶⁵⁾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한 상법상의 규제완화의 효과와 관련하여 상법 개정시점을 기준으로 주식회사의 설립 건수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상법 개정과 주식회사의 설립건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규제완화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찾아보고자 시도한 것이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한 상법상의 규제완화가 주식회사의 설립 수의 증가에 미친 영향은 다소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설립절차에 대한 상법의 개정이 있은 직후의 경험적 증거는 그 효과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즉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관한 상법의 개정이 주식회사의 설립 수의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1년 이후 주식회사의 설립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의 설립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원인은 설립절차에 대한 상법상의 규제완화의 효과에서 찾을 수 있는 측면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설립건수의 증가의 원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과 침체라고 하는 경제적 요인에서 더 많이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즉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주식회사의 설립 건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성이 높은 것처럼 보인다.

한편, 1991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즉 20년 동안 전체 회사 중(외국회사는 제외) 주식회사의 비중은 평균적으로 93~95%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설립절차가 상대적으로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보다 훨씬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회사 중 그 비중이 작고, 설립건수도 상대적으로 적다. 결국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한 규제완화로 인해 다른 종류의 회사의 설립에 대한 유인이 약화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회사의 형태의 선택과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설립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주식회사 설립 절차의 규제완화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사회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즉 일반국민들이 회사의 형태를 선택할

65) 주식회사의 납설은 시장을 교란함으로써 각종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설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회사법의 기본과제 중의 하나가 된다. 이철송, 전개 각주1, 33-34면.

때,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정보가 적다는 점, 설립비용의 측면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⁶⁶⁾, 일반적으로 회사라고 하면 거의 모두 주식회사를 떠올린다는 점, 회사를 설립하여 단 시간에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식회사에만 존재한다는 점 등에 기인한 것처럼 보인다.

결론적으로 장래 상법상의 규제완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기업문화, 일반국민의 기업에 대한 인식 등과 같은 규제완화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과 요인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상법상의 규제완화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과 함께 학제간 연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향후 이 분야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화진,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 박영사, 2010.
- 우홍구, 「회사법」, 진명문화사, 1977.
- 이기수·최병규, 「제8판 회사법」, 박영사, 2009.
-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흥문사, 2010.
- 이철송, 「2011 개정 상법-축조해설-」, 박영사, 2011.
- 이철송, 「제20판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2.
- 임재연, 「회사법I」, 박영사, 2012.
- 정동윤, 「제7판 회사법」, 법문사, 2001.
- 최기원, 「제13대정판 회사법」, 박영사, 2009.
-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2001.
- 법원행정처, 「2002년 사법연감(2001.1.1.~12.31)」~「2011년 사법연감(2010.1.1.~12.31)」.
- 한국은행, 「한국은행50년사」, 2000.
- 김재광, “규제와 법제 개선 그리고 경제적 효과”, 「경제!-Regulation? - 규제

66) 오수근·김성애, 전계논문, 420-421면.

- 입법의 현황과 향후 과제-(공동 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국입법정책학회, 2012.
- 오수근·김성애, “회사 형태의 선택에 관한 실증연구”, 「상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02.
- 안수현, “내부통제의 회사법제 정비를 위한 검토”, 「상사판례연구」 제20집 제2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07.
- 한상우,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과 향후 입법적 과제”, 「경제!-Regulation? - 규제 입법의 현황과 향후 과제-(공동 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국입법정책학회, 2012.
- Henry Hansmann & Reinier Kraakman, “The End of History for Corporate Law”, 89 *Georgetown Law Journal* 439, 2001.
- Martin Gelter, “The Dark Side of Shareholder Influence: Managerial Autonomy and Stakeholder Orientation in Comparative Corporate Governance”, 50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129, 2009.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Deregulation in respect of
Incorporation Process of Business Corporations Under
Commercial Code

Chung, Dae

*Associate Professor of Law, Division of Maritime Law,
Korea Maritime University*

Under capitalism business corporation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Business corporations which are characterized as capital, stock and limited

liability have been an essential foundation of national economy. In reality the number of business corporations is dominant among the types of enterprises, so law of business corporations is considered as significant under the Commercial Code.

Deregulation has greatly been emphasized in society. Generally speaking, deregulation has have an effect on competitiveness in market and also transparency at the level of government. Therefore, government has consistently pursued the policy of deregulation.

In this connection, incorporation process of business corporations under the Commercial Code has been deregulated all the time. That is to say, government has made an effort to let establishment of business corporations easy through deregulation of incorporation process.

However, the study on effects of deregulation has been somewhat neglec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and research into effects of deregulation of incorporation process.

First, it is necessary to make clear the meaning and background of deregulation. Second, the effects of deregulation of incorporation process are analyzed on the basis of the number of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business corporations for the past 20 years.

In conclusion, the growth of the number of establishment of business corporations results from socioeconomic factors rather than the effects of deregulation of incorporation process. In this connection, various environment and other socioeconomic factors should be analyzed drastically when government intends to pursue the policy of deregulation.

Key words : deregulation, incorporation process, business corporation, Commercial Code, registration, establishment of business corporation